

사 업 연 도	2024-01-01 2024-12-31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	법 인 명	주식회사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	
				사업자등록번호	550-86-00867	

구 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																		
중 기 업	(101) 사 업 요 건 ①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신평가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※ ②, ③ 은 2025.0.0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 <th>기준경비율코드</th> <th>사업수입금액</th> </tr> <tr> <td>업태별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(01) 제조업</td> <td>(04) 181110</td> <td>(07) 250,990,651,998</td> </tr> <tr> <td>(02) 도매업</td> <td>(05)</td> <td>(08)</td> </tr> <tr> <td>(03) 그 밖의 사업</td> <td>(06)</td> <td>(09)</td> </tr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>250,990,651,998</td> </tr> </table>	구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업태별			(01) 제조업	(04) 181110	(07) 250,990,651,998	(02) 도매업	(05)	(08)	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계		250,990,651,998	(17) 적 합 (Y) 부적합 (N)	(26) 적 (Y) 부적합 (N)
	구분	기준경비율코드	사업수입금액																			
	업태별																					
	(01) 제조업	(04) 181110	(07) 250,990,651,998																			
(02) 도매업	(05)	(08)																				
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																			
계		250,990,651,998																				
(102) 규 모 요 건 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「평균매출액등」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-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 출 액 - 당 회사(10) (2,482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1,500 억원)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1,589 억원)	(18) 적 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	
(103) 독 립 성 요 건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・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・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・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・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・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(102)의① 기준) 이내일 것	(19) 적 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	
(104) 유 예 기 간 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일 것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(102)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[2024년 11월 1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는 5개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7개)]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○ 사유발생 연도(13) (2021 년)	(20) 적 합 (Y) 부적합 (N)																				
소 기 업	(105)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 요건(103)을 충족하는지 여부	(21) 적 (Y), (N)	(27) 적 (Y) 부 (N)																		
	(106)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,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「평균매출액등」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	○ 매 출 액 - 당 회사(14) (2,482 억원)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120 억원) 이하	(22) 적 (Y), (N)																			
중 견 기 업	(107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101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적 (Y), (N)	(28) 적 (Y) 부 (N)																		
	(108)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・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・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・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	(24) 적 (Y), (N)																			
	(109)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법 제5조 제1항) 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조제1항제2호(가목2)) 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, (영선동,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) (영선동,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) 삼 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김 교 태	(25) 적 (Y), (N)																			